

의안번호	2210769
의 퇴 인	임오경의원
회 답 일	2025.7.9.
추계번호	25D314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6년 158억 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35억 3,400만원(연평균 147억 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폐지 (안 제29조)	15,805	15,233	14,685	14,158	13,652	73,534	14,707

주: 본 추계는 과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현황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추계에서 제외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은 등·초본 발급 건수에 비해 건수가 적고 열람 건수 중 무료¹⁾로 발급받은 건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정수입 감소 대상이 되는 유료 열람 건수 내역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표 2] 주민등록표 열람 현황

(단위: 건수)

년도	주민등록표 열람 건수(A)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건수(B)	
		등·초본발급 대비(A/B)	
2024	1,718,059	1.6%	109,927,451
2023	1,989,569	1.9%	104,985,483
2022	2,390,301	2.2%	110,346,360
2021	2,062,486	1.8%	117,058,87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²⁾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400원이며, 제3자가 발급하는 경우에는 5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인 2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최근 4년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건수를 살펴 보면, 창구에서 발급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고 동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주민등록법상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③ (생략)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하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건수는 연간 편차가 있음

- 추계기간 동안 창구발급 건수는 2024년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4%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건수는 2023년과 2024년 평균 발급건수(7,577천건)로 가정

[표 3]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현황

(단위: 건수)

년도	창구발급 건수		무인민원발급 건수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2024	36,569,206	-4.0%	6,987,252	-14.4%
2023	38,092,472	-9.1%	8,166,246	-17.6%
2022	41,884,770	-13.8%	9,911,346	+11.9%
2021	48,568,500		8,859,02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6년 158억 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35억 3,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6~2030년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창구 발급	건수(a)	33,702	32,354	31,060	29,818	28,625	155,559
	수수료(b)	424	424	424	424	424	-
	계 (c=a×b)	14,290	13,718	13,169	12,643	12,137	65,957
무인 민원 발급	건수(d)	7,577	7,577	7,577	7,577	7,577	37,884
	수수료(e)	200	200	200	200	200	-
	계 (f=d×e)	1,515	1,515	1,515	1,515	1,515	7,577
합계(c+f)		15,805	15,233	14,685	14,158	13,652	73,534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창구발급 수수료는 본인발급(400원)과 제3자발급(500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2021년~2024년 납입된 평균 수수료인 424원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과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현황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주민등록법상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연번	면제사유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미성년자의 자녀(가족관계등록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